

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

1. 제안사유

2006. 1. 1부터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법령이 「지방재정법」에서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으로 변경되어 「사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를 개정하려는 것임

2. 주요골자

- 가.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 생략가능 재산의 범위를 3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확대(안 제4조제2항)
- 나.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 기산일을 실제사용 시작일로 할 수 있도록 조정(안 제16조)
- 다. 대부료 등이 전년대비 10%이상 증가한 경우 증가율에 따라 인상율을 결정하던 것을 대부 목적에 따라 인상율을 결정하는 것으로 변경(안 제33조)
- 라. 대부료·변상금의 분할납부 규정을 금액에 따라 분납기간과 횟수를 세분화(안 제34조제2항, 제62조제1항)
- 마. 수의계약으로 매각 가능한 토지를 200m²이하에서 300m²이하로 확대(안 제39조제1항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, 「동법 시행령」
- 나. 입법예고 : 2006. 3. 27 ~ 4. 17(20일간) ▷ 제출의견 없음

4. 검토의견

-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 관련 법률의 분야별 독립 입법화 방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종전의 「지방재정법」에서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이 분리, 제정됨에 따라 우리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
- 주요 내용은,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를 전반적인 공시지가 등의 상승으로 3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고
-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의 기산일을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실제 사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
- 대부료 등이 전년대비 10%이상 증가한 경우,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대부 목적에 따라 40%~50%로 감액하도록 조정하며
- 대부료, 변상금의 분할납부 규정을 금액에 따라 분납기간과 횟수를 세분화하고,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를, 1981. 4. 30일 이전부터 건물이 있는 토지의 경우, 200m^2 이하에서 300m^2 이하로 조정함
- 이상과 같이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및 동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, 적정한 것으로 사료됨